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

발의연월일: 2020. 6. 12.

발 의 자:이 영·김 웅·金炳旭

송언석 · 이 용 · 박덕흠

김정재 · 윤창현 · 한무경

양금희 · 송석준 · 유의동

윤영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 등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공제한도액이 점차 상향됨에 따라 공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평균 가업상속 공제건수가 90건이 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여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 원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천억원"을 "1조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200억원"을 "50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00억원"을 "7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0억원"을 "1천억 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
	<u>수</u>)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2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	
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	
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	
용하지 아니한다.	·.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	
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	
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u>3천억원</u> 이상인	<u>1조원</u>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	
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 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 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 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 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 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u>300억원</u>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u>500억</u>
- 2. (생략)
- ③ ~ ① (생 략)

가
500억원
나
700억원
다
1천
억원

2.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